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4. 12(목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항공보안과	담 당 자	·과장 김용원, 주무관 박상현, 주무관 김규희 ·☎ (044) 201-4232, 4237, 4238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항공기탑승 유효신분증에 “여행증명서” 포함여부 관련

- 외교부가 발행하는 여행증명서는 항공기 탑승에 필요한 유효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여행증명서는 여권분실 등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국가가 발급하는 신분증이므로, 항공기 탑승을 위한 유효 신분증에 해당되며, 우리부는 동 내용을 한국공항공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. ('18.2.23)
- 보도내용 중 “유권해석 등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”은 사실과 다르며, 현재 국내공항에서 국제선·국내선 탑승시 여행증명서를 사용하여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뉴시스, 4.12.) >

- ◆ “신분증 있어도 집 못가” 제주 할머니의 기막힌 사연
 - 항공기 탑승위한 유효신분증에 여행증명서 포함안돼, 국토부 “유권해석을 포함한 해결 방법 모색할 것”